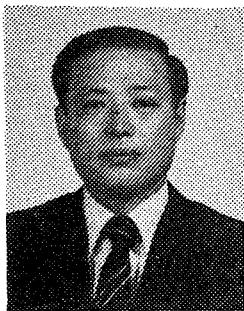




騷音公害를 생각한다.

소음은 이제 단순한 시끄러운 소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에게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公敵이 돼버렸다



環境廳 공보 담당관
本報편집위원 최신철

騷音은 生活의 公敵

『당신은 소리에 의하여 침묵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騷音)에서는 어떻게 빠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침묵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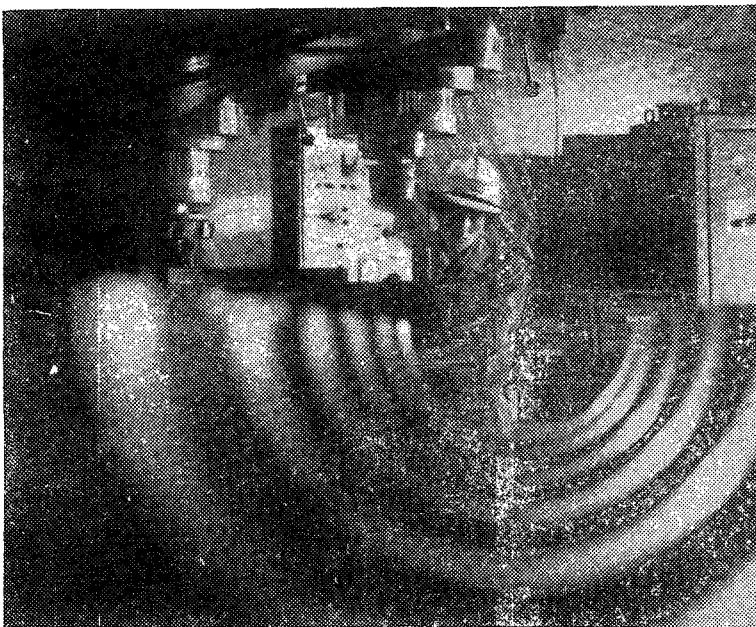
이것은 일찌기 A·J 토인비와 장·콕트와의 대담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소음이 얼마나 인

간의 정서를 해치며, 사고와 사색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단증하는 말이다.

소음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하게 그 반응이 나타난다. 아무리 아름다운 슈벨트의 자장이나 베토벤의 피아노곡도 듣기 싫으면 소음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 아름다운 소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음은 어디까지나 소음이다. 80년 환경청이 발족된 이후 환경청이나 시·도 공해방지계에서는 소음에 관한 진정을 해야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소음에 관한 진정은 다른 어느 것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소음은 단순한 시끄러운 소리의 범주를 벗어나 생활의 공적(公敵)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환경보전법에는 소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즉, 소음이란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음』이다. 따라서 소음은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소리 즉 시끄러운 소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소음은 시민의 안온한 생활을 파괴한다는 뜻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영국과 독일은 소음규제법을 만들었다.

영국은 1960년에 소음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시원은 1936년 공중위생법 제99조(생활방해)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은 『건강상 유해한 소음,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제외된 기업이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타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1965년에 연방법으로 정한 『건설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정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68년에 소음규제법을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환경보전법의 제정으로 소음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80년 환경청이 발족되면서부터 소음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돼 있다. 그러나 소음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감각공해(感覺公害)로써 그 발생원이 고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동적인 것도 있으며, 계속적인 것만이 아니고 간헐적인 것도 있어 지도와 단속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다.

소음은 학술적으로 분류해 보면, 첫째 공장에서 발생되는 기계류에 의한 소음. 둘째, 건설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공사 소음. 세째, 자동차, 기차, 비행기, 선박 등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네째, 주택가 주변에서 발생되는 확성기, 피아노, 전파사 등의 근린 생활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20여년 전만 하여도

“

환경보전법에서의
소음이란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강한 음」이라
규정하고 있다

”



“

기계류에 의한 소음, 건설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소음 등이 주 소음원이 되고 있다

”

소음공해 문제는 상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도시나 촌락이나 어디를 가도 고작해야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이나 기계 소리는 오히려 그 지역의 발전을 상징하였으며 한 두 곳의 공장에서 나는 소리는 별로 소란스럽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의 팽창, 인구의 증가, 교통량의 증대, 산업시설의 대형화 등 급진적인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각종 환경오염과 더불어 소음문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사회문제화되었다.

전문의사나 예방의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소음은 60 데시벨 이상일 때에는 사람에게 생리적 영향을 주며, 피로축진, 혈압상승, 작업능률의 저하, 소화기능의 감퇴, 정서와 신경의 불안 등을 일으키며, 100 데시벨을 초과하는 상태에서는 청각기능의 마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환경보전법상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함에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하는 환경보전법 제 4 조에 의거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소음 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계몽을 강화하며, 교통소음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방음벽과 같은 필요한 소음방지시설 설치를 촉구·권장하고, 각종 소음대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나와 無關한 汚染行爲라는 생각

6년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음향학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일본의 니모라(二村忠元)교수는 그의 논문『소음문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서 OECD가맹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억인

이상이 65 데시벨 이상의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ISO』라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도시주거 지역 옥외소음권고치가 55 데시벨이다. 이를 감안할 때 65 데시벨은 엄청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소음 중에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소음을 생각해 보자.

생활소음은 주택가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근린소음이다.

이러한 생활소음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청은 지난 '83년에 처음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되기는 아직도 미흡한 감이 있으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국민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하여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 못지 않게 모든 관계 단체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착되도록 협조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또한 모든 사람이 환경오염문제는 나와는 아무 상관 없으며, 남이 오염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을 갖고 있다.

66

이제 소음은 도시나 농촌의 구별이 없게 돼버려
동구밖 살구나무 언덕의 송아지 울음이 그립기까지 하다

99

나 자신이 먹고 마시며 배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염원인이 되며, 또한 그로인해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오염원인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음 문제도 그러하다.

이웃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주택가 복판에서 밤낮으로 자동차의 경적을 울리거나, 시동을 걸거나, 시끄러운 작업을 하거나, 확성기를 틀거나 하는 행동은 삼가하여야 한다.

또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의 피해나 안면을 생각해서라도 지나친 소음이 될만큼 TV나 라디오나 피아노, 전축 등을 트는 일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아파트단지에 사는 주민일수록 심야에 유효에서 빨래 방망이질을 한다거나, 북어를 두드린다거나, 못질을 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충제를 오르내리는 구두 발자국소리, 세탁기, 전공 청소기, 잔디풀깎기의 소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성이나 시민의식이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다가오지 않았는가.

都市도 農村도 騒音이

시내 버스를 타다보면 차내에서 요란하게 흘러나오는 라디오, 카셋트 소리는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도시 시내 버스는 차내 방송을 “다음 정거장이 어디”라는 것만 알리고 있음에 비교할 때 우리의 차내 소음문제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소리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으며 예전처럼 소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고도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 그에 따른 부수물인 여러가지 공해중에 소음을 겪어야 한다는 일은 참으로 달갑지 않는 일이다.

문득 소음에 대한 이같은 생각을 하다보니 20여년전 우리의 농촌이 생각난다. 그 때에는 고속도로도, 경운기도, 전파사도 없었다. 그러나 그 농촌도 이제는 오토바이 소음, 경운기의 소음, 전파사의 소음, 고속도로의 차량소음으로 변모되고 있다.

따라서 소음은 도시나 농촌의 구별이 없게 되었다.

이제 동구밖 살구나무 언덕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으며 울던 송아지 울음소리, 마을을 지나는 옛장수의 가윗소리 그리고 도시의 뒷골목에서 진진 겨울밤 외쳐대는 메밀묵 장수의 목소리가 그립다. 이러한 소리가 제발 소음이 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환경의식 드높일 때

나라힘도 강해진다